현장실습생을 위한

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

7. 학습중심 현장실습, 제대로 알고 가자!

본 자료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배부하였으며
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.

KCLI 한국고용노동교육원

1. 학습중심 현장실습

1. 현장실습

-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는 교육과정의 하나
- '일, 경험을 통한 학습 과정'
  - 다양한 직업적 체험의 경험
  - 현장 적응력 제고
  - 진로 선택의 기회 확대
- 현장실습 유형: 교내 현장실습,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,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,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

  ※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

  •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학생이 해당 기업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유형

  • 학생의 전공과 기업에서 교육받는 직무가 일치해야 함

1. 학습중심 현장실습

-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도입(2018년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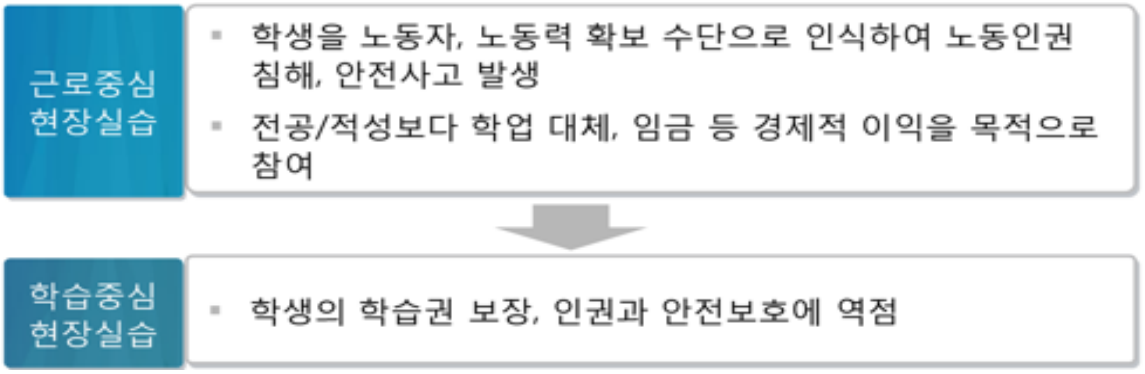

1. 학습중심 현장실습

1. 현장실습

- (기존)근로중심과 (개선)학습중심 현장실습 비교

구분	근로중심 현장실습	학습중심 현장실습
운영 형태	조기 취업 형태	취업 준비 과정(산업체 채용형)
교육과정 연계	자율	실무과목과 연계 (OJT, 현장직무교육)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(학교+기업)
현장실습 운영 기간	최대 6개월	최대 3개월 (수업일수의 1/3 이내)
현장실습 계약	현장실습표준협약서, 근로계약서(권장)	현장실습표준협약서
수당	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보장	기업(현장실습 수당) 및 국고, 교육청에서 지급 (현장실습 지원금)
신분	학생 및 근로자 혼용	학생
관련 법령	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, 「근로기준법」	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- 진행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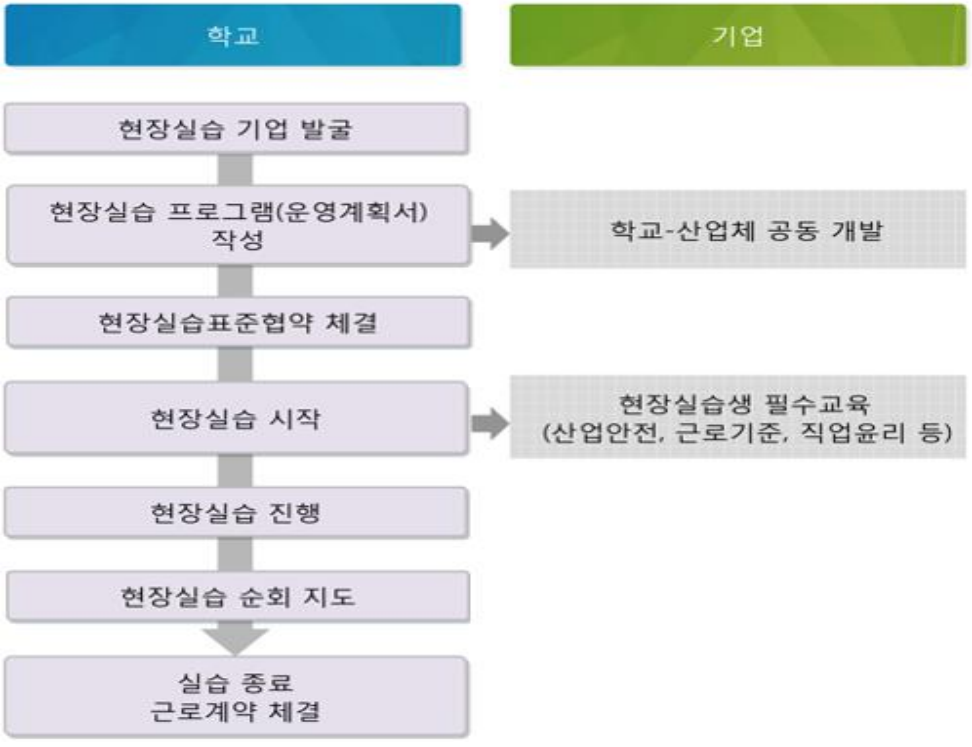

1. 학습중심 현장실습

3. 현장실습 프로그램(운영계획서)

- 현장실습의 운영 목적 및 실습 요구사항, 학생의 사전경험 및 교육과정 이수 내용, 현장실습 산업체의 여건 및 직무의 성격 등 고려
- '입문교육, 실무교육(OJT) 구분하여 교육내용별로 적절한 교육방법, 시간 설정
  - 최대 3개월(수업일수 1/3 범위 이내)까지 적절한 실습 기간 검토
  - 입문교육 시간은 현장실습 시간의 30% 이상 편성
  - 입문교육 시간의 일정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및 의무교육으로 편성
  - 오리엔테이션 및 의무교육 : 실습업체 및 업무 소개, 법정 필수 교육
    (산업안전보건 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,
   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)
- 기업현장교사 지정 : 동일한 작업장 내에서 1:1 지도가 가능한 현장전문가
  - 현장실습생이 기업현장교사의 시범과 직무수행과정을 관찰하고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

4. 현장실습 참여 기업과 선도 기업

-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
- 우수기업 및 강소기업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
  - 교육환경의 안정성, 교육프로그램 및 기업현장교사 유·무, 취업연계 가능성, 진로계발 경로 등의 다각적 검토
  - 현장실습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

➢ 노무사 참여(건설, 기계, 전기, 화공 등 유해 위험 업종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협조하여 현장실사 진행)

➢ 산업체의 직무내용,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시설·설비, 실습여건 등 점검

한국고용노동교육원

1. 학습중심 현장실습

- 현장실습 참여 제한
  - 산업재해 다발 기업,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기업, 중대재해 발생 기업, 사망재해 발생 기업, 임금체불 기업
  -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주유소, 편의점, 오토바이 운전 음식 배달 등의 일용직이나 단순 아르바이트 및 인력파견업체
  -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, 고압 작업 및 잠수 작업, 운전·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·조종 업무,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,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, 주유업무를 제외한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

- 선도 기업과 참여 기업 비교

구분	선도기업	참여기업
인정 주체	시·도교육청	학교
선정 절차	현장실사 → 학교 현장실습운영(소)위원회 → 시·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심의	현장실사 → 학교 현장실습운영(소)위원회 심의
현장실습 운영 기간	1주(5일) ~ 3개월(60일) ※ 일수는 실습일을 기준으로 함.	
사전 현장실사	필수	
학생 순회지도	필수	
노무사 기업 코칭	필수	선택
취업 전환	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단, 4주(실습일 기준 20일) 이상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후	3학년 겨울방학 시작 이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

2. 현장실습표준협약서

1. 현장실습 협약당사자

- 현장실습기관(산업체), 학교학생(현장실습생 본인), 직업훈련기관(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)

2. 실습 기간, 실습 시간과 휴식

- 실습 기간 및 실습 시간
  - 1주부터 3개월 이내
  - 1일 7시간 이내, 1주 35시간 이내
  - 단, 학생의 동의가 있을 경우 1일 1시간, 1주 5시간 연장 가능 (☞ <현장실습표준협약서> 동의여부 표기)
  - 야간(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) 실습 불가
- 휴식 시간 : 실습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
- 휴일 : 1주 2회 이상

3. 현장실습의 방법 및 절차

- 산업체와 학교가 개발한 '현장실습 프로그램'
  -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
  - 별도 협의 없이 현장실습 이전에 작성된 현장실습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학교 연락
-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'현장실습담당자(기업현장교사)' 배치
  - 현장실습 교육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현장전문가
  - 위험요소가 많은 직무의 경우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어야 함

2. 현장실습표준협약서

4. 재해보상

-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 가입
  - 현장실습 중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근로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

5. 현장실습 참여 수당

- 실습 시간에 비례하여 월 최저임금 상당액 지급
- 2025년 기준, 현장실습 기업은 현장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30% 수준 이상을 현장실습 수당으로 지급하고, 나머지(최저임금의 70%)는 국고 및 교육청 예산으로 보조하여 현장실습 지원금 형태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
  지급

3.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권익 보호

1. 현장실습 모니터링(하이파이브)

- 하이파이브(www.hifive.go.kr)
  - 참여 기업/선도 기업 선정, 현장실습생의 파견 및 복교, 순회지도 결과, 취업 등 현장실습 전반 관리

2. 순회지도(학교)

- 실습 시간의 건강 상태 및 실습 상황, 산업체의 운영 실태 점검, 취업 연계 가능성 파악
- 학생의 안전보건을 저해할 요인, 근로권익의 부적절한 보호 등이 발견되거나 협약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되어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체와 협의하여 시정을 요청하거나 실습을 중단시키고 근로감독 요청
- 현장실습 지도·점검 체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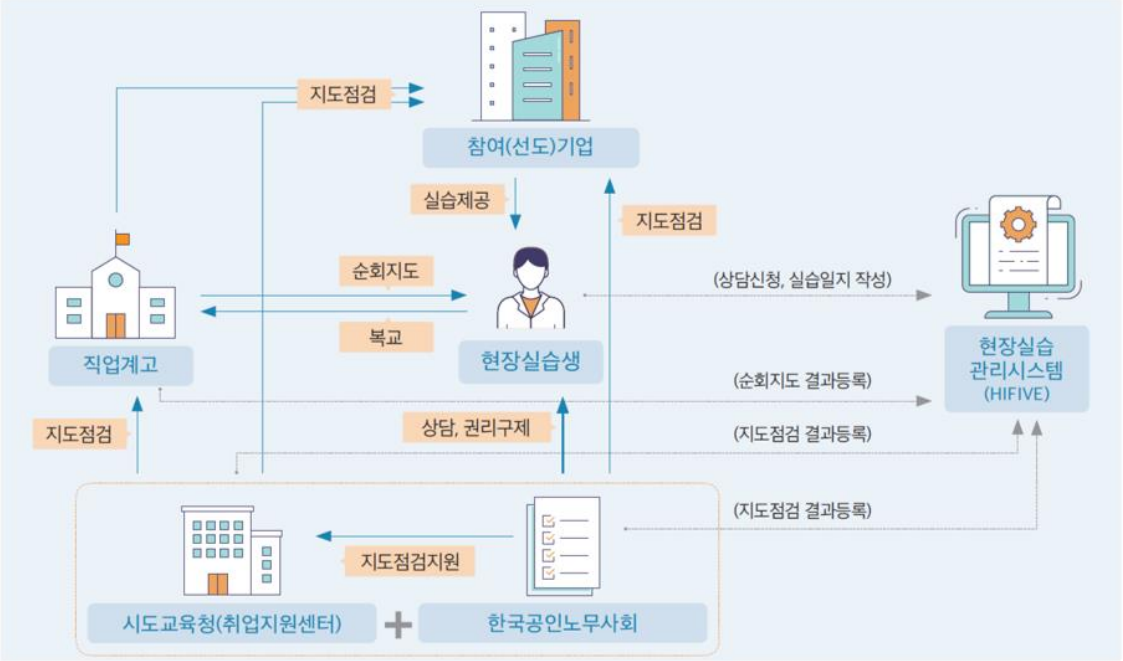

3.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권익 보호

3. 학교전담 노무사 제도

- 현장실습과 노무관계에 대한 상시적 상담과 현장실습생의 권리구제 지원
-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참여,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걸쳐 협력
-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
-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 시 현장실사 참여
- 현장실습 순회지도 지원 및 코칭

4.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

- 중앙·시도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
- 공인노무사와 연계하여 권익구제와 시정조치 지원

5. 현장실습생 안전용품 지급

- 현장실습생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관심 유도 및 안전강화
- 여건에 따라 실습복, 안전조끼, 배지, 명찰, 머플러, 장갑, 보호경, 마스크, 토시, 안전화, 가운, 모자 등을 지급

6. 사전교육

-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법 교육
- 산업안전보건 교육
- 직업윤리 교육 :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